


KEMA (네덜란드)

1. 개요

<p>■ 정의</p>	<p>KEURING VAN ELECTROTECHNISCHE MATERIALEN (네덜란드전기시험소)</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전기안전 규격, 비강제 규격(일부품목 강제) - 플러그 및 소켓 아웃렛만 강제인증이 적용되고 다른 전기제품의 인증 취득은 임의이다. 모든 전기제품 및 규정된 전기제품을 네덜란드 시장에 낼 경우 반드시 해당되는 전 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p>■ 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amloze Vennootschap Tok Keuring Van Electrotechnische Materialen : www.kema.com
<p>■ 적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유럽, 미국(선박 및 방폭분야), 캐나다(선박 및 방폭분야)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MA는 세계적인 규격 기관중 하나로써 대용량 전기기계 및 전기 부품에 대한 명성으로 인증 획득시 품질의 신뢰성(우수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 시험과 인증분야는 KEMA의 KEUR마크이며 N.V.KEMA가 관리한다. - KEMA 마크는 전기 제품만의 인증마크이다. - 사후관리는 정기공장검사가 연 1회 이상 실행된다. 공장검사는 KEMA를 대신하여 현지 기관이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에서는 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대행하고 있다.
<p>■ 인증마크</p>	

<p>■ 대상품목</p>	<p>- Cable, Connector, Special Fittings Cable, Cable Mass, 전기Conduit용 접속 Box, Bayonet Lampholder, Edison Lampholder, Plugs 및 Concent, Switches, 소형회로 차단기, 안전절연변압기, 기기용접속기, Conduit(전선관), 소형 Fuse, 형광등용 Lampholder, 가열조리기, Trans- former 등.</p>
<p>■ 적용규격</p>	<p>- Electricity Law(전기법) - KEMA Standard (NEN Standard와 거의 동일) : CENELEC, IEC, CEE규격에 기초함.</p>

2. 일반현황

KEMA는, 1927년 전력공급에 대한 책임을 갖고, 대부분의 지방 공급단체와 중심이 되어 전기제품의 시험과 검사, 전력의 공급에 관한 조사 등을 실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민간회사이다.

네덜란드에서는, IEC 및 CENELEC의 국내 위원회인 네덜란드 전자기술 위원회(Netherlands Electrotechnical Committee: NEC)가 네덜란드 표준협회(Netherlands Normalisatie Instituut: NNI)와 업무적으로 제휴하여 전기·전자 기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시험과 인증분야는 독립적인 인증마크가 있다. KEMA의 KEUR마크는 N.V.KEMA가 관리한다. KEMA 마크는 전기 제품만의 인증마크이다.

3. 인증제도

네덜란드에서 전기제품안전은 네덜란드 전기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고, 현재 2개의 전기법령이 있다. 하나는 1968년에 발행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76년에 발행된 것이다.

1976년 발행된 것은 EC 의 저전압지침(73/23/EEC)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1976년 발행된 전기법은 1977년에 발효되었으며, 이와 함께 1968년에 발행된 전기법(STB 1968, 493)은 담당분야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은 제품을 담당하게 되었다.

- 폭발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 의료용 기기
- 가정용 2극 플러그 및 소켓 아웃렛

현재 인증 취득이 강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플러그 및 소켓 아웃렛 뿐으로 다른 전기제품의 인증 취득은 임의이다. 이들의 법령은 무엇보다도 모든 전기제품 및 규정된 전기제품을 네덜란드 시장에 낼 경우 반드시 전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KEMA의 KEMA-KEUR인증제도는 네덜란드 정부의 보호에 근거하여 설립했다. 독립기관으로 있는 "네덜란드 인증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있는 기관이다.

KEMA 인증마크는 대부분 전세계에 등록되어 보호되고 있다.

KEMA의 시험 요구사항 대부분은, IEC 또는 CENELEC 규격에 근거하는 것으로 네덜란드 전자 기술 위원회의 규격도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동일하다.

KEMA가 행하고 있는 인증제도에는, KEMA만이 단독으로 형식시험을 의뢰 할 경우 이외에, CCA 협정, HAR 협정과 CB제도에 근거하는 것도 있다. 어느 인증제도의 경우든지 인증전 공장검사가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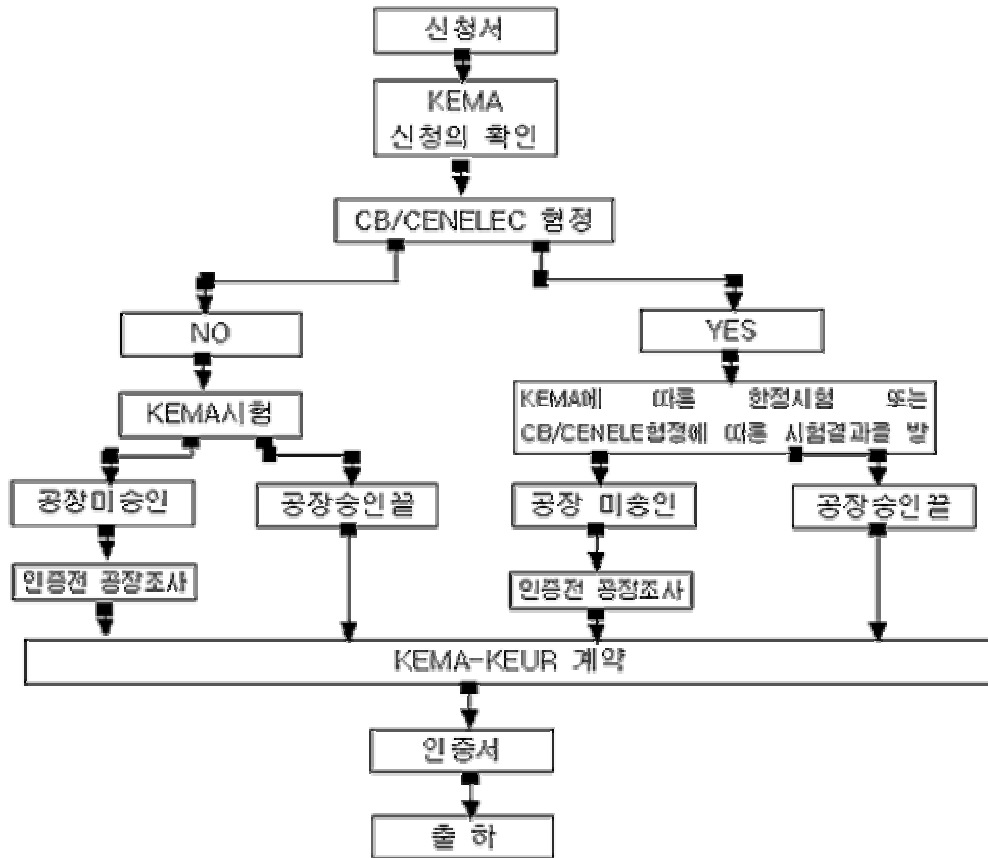
4. 신청절차

국외에서 직접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자는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 신청서를 송부 할 경우에는 신청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품 카다로그, 취급설명서, 또는 외관치수도, 사진, 및 정격, 회로도 등이 필요하다.

신청서를 송부 한 후, KEMA에 의해서 신청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이 수리되어지면 필요한 샘플, 자료의 통지가 온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신청서와 자료, 샘플을 함께 송부하는 편이 시간단축을 가능하게 한다.

KEMA에 의해서, 신청한 제품의 시험 또는 서류 심사 결과가 인정되면, 품질보증관련규격에 의해 인증전 공장심사가 실행된다. 전부 합격하면, KEMA와 신청자간에 인증계약이 체결된 후에 청구서와 인증서가 발행된다. KEMA에 인증을 신청하면서, CEBEC의 승인도 동시에 요구하면, KEMA는 CEBEC을 대신하여 CEBEC의 승인서도 발행한다. 그 경우 벨기에의 대리인명을 위임하여 통지할 필요가 있다.

신청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5. 계약 및 사후관리

KEMA에서는 제품시험, 서류심사, 인증전 공장검사의 결과가 모두 합격한 경우, KEMA와 신청자 사이에 계약서가 교환된다.

사후관리는 정기공장검사가 연 1회 이상 실행된다. 공장검사는 KEMA를 대신하여 현지기관이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에서는 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대행하고 있다. 또한, KEMA-KEUR 마크가 붙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무작위 추출되어 검사되어 지고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다.

6. KEMA 인증을 취득한 품목 (최근 3년간 중소기업대상)

3상 전력량계	전자식전력량계	방폭등기구
---------	---------	-------